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89호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('25.8.27.)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'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'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9월 4일
서울특별시

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

연번	자치구	구역명(가칭)	위 치	면적(㎡)	권리산정기준일
1	영등포구	-	도림동 133-1 일대	63,654	2025.07.21. (자치구 요청일)
2	강북구	-	미아동 159 일대	37,709	2025.07.15. (자치구 요청일)
3	도봉구	-	방학동 638 일대	39,270	2025.07.30. (자치구 요청일)
4	구로구	-	가리봉동 2-92 일대	25,776	2025.07.30. (자치구 요청일)
5	동작구	상도16	상도동 214 일대	85,787	2025.05.23. (자치구 요청일)
6	동작구	사당15	사당동 419-1 일대	133,007	2025.07.30. (자치구 요청일)
7	마포구	-	아현동 331-29 일대	18,557	2025.07.30. (자치구 요청일)
8	용산구	용산1	용산동2가 1-1351 일대	43,016	2025.07.29. (자치구 요청일)

※ 면적은 참고용으로,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

2. 지정사유

-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 주민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
3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만 기준이 적용되며,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기준은 자동 실효(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)

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5. 안내사항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(☎02-2133-7236)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자치구	부서명	연락처	비고
영등포구	주거사업과	02-2670-3531	
강북구	재개발재건축지원단	02-901-6839	
도봉구	재건축재개발과	02-2091-3416	
구로구	도시개발과	02-860-2964	
동작구	도시정비1과	02-820-1964	
마포구	주택상생과	02-3153-9336	
용산구	재정비사업과	02-2199-7463	